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09.06)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이 창 환]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8. 28

2. 제정이유

-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 확대 필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위원명칭 변경,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
 - 위원정수 확대 : 15명 내 ⇒ 20명 이내
 - 위원명칭 변경
 - 거창교육청교육장 ⇒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 재난관리과장 ⇒ 안전총괄과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3. 6. 10. ~ 6. 30.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결과)

- 이 조례안은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확대 필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 13. (생략) [전문개정 2009.5.21]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 2013.6.23] 제5조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5.21>]

[시행일 : 2013.6.23] 제16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11.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11.18>]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09.11.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11.17>]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

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전문개정 2009.11.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11.17>]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09.11.17>]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8. 27.
- 나. 제 출 자 : 조기원, 이성복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8. 28.

2. 제안이유

-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생산적 복지 확충,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협동조합의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13. 8. 23 ~ 8. 29. / 물품 우선구매요청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협동조합의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

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과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 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8. 27.
- 나. 제 출 자 : 이성복, 강창남, 안철우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8. 28.

2. 제안이유

-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步道)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한 보도정비·보수 시에 발생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나.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보도의 정비계획

- 보도정비·보수 매뉴얼과 공사관리,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포장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도공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보도공사 예고제와 실명제 시행
- 보도공사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신속한 정비·보수를 위한 보도블록의 확보와 보관

라. 보도의 정비기준 규정(안 제6조)

- 보도정비·보수구간 선정의 우선순위 수립
- 보행 장애물제거 및 보도턱 없애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금지

마. 보도블록의 재활용 규정(안 제7조)

-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보관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공공사용 및 무상제공
-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도시건축과와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8. 23 ~ 8. 29.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인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도정비·보수에 발생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보도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보도의 정비기준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인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도정비·보수에 발생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